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[ ]총포 [ ]도검 [ ]화약류 [ ]분사기 [ ]전자충격기 [ ]석궁 [ ] 수입 [ ] 수출 허가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법인명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
	대표자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)	
신청 내용	종류	제품명
	수량	수출입 국명
	경유국명(장약총포 · 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는 경우)	수출입 방법 및 목적
	수출입지	수출입 예정기간 . . .부터 . . .까지
	총포 제조번호(장약총포의 경우)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) (수입·수출)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 서류	1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경우: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종류·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. 화약·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: 화약·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. 화공품의 경우: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. 장약총포·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: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(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) 1부 및 제3국을 경우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(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<필요시 추가 기재란 이용>

제조번호(장약총포의 경우)			

처리절차

